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30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5. 10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 등에 따른 “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” 업무는 행정안전부 기관위임사무로, 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”는 대법원 판결(2000.5.30.)과 행정안전부 재해영향분석과의 권고에 따라 기존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폐지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## 3. 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 : 붙임

(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, 제76조

(2)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조, 제7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23. 3. 30. ~ 4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- 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따로 붙임(※미첨부 사유서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**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**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관계행정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(지역·지구·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(이하 “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계획등”이라 한다)의 확정·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협의(이하 “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·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10. 24.>

1.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
2.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
3.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

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10. 24.>

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4. 20.>

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(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4. 20.>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, 2021. 4. 20.>

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

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, 2021. 4. 20.>

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, 재해의 예방·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, 2021. 4. 20.>

⑩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,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24., 2021. 4. 20.>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[제목개정 2017. 10. 24.]

**제76조(권한의 위임 등)**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2. 2. 22.]

## □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

**제5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·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8. 6., 2014. 11. 19.,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, 2021. 10. 19.>

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0. 19.>

1.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  2. 수자원, 토질 및 기초, 토목시공, 산림, 도로 및 교통, 도시계획, 해안항만 등 분야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분야”라 한다)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
나.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
다.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
라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

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

마.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

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. 26.>

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10. 23., 2020. 6. 16.>

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(이하 “개발계획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>

1.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
2.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
3.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
4.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

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 10. 23.>

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1. 26., 2018. 10. 23.>

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10. 23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[제목개정 2018. 10. 23.]

**제73조(권한의 위임)**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(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)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4. 8. 6., 2017. 1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>

1. 시·도지사 및 시·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: 해당 시·도지사
2.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군·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: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[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(이하 “해당 권한”이라 한다)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]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

위임한다. <신설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18. 10. 23., 2018. 12. 31., 2021. 10. 19.>

1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
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
3.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
4.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
5.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
6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16., 2021. 10. 19.>

1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
2.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·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
3.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·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. <신설 2020. 6. 16.>

[전문개정 2012. 8. 22.]

### 1. 비용 발생 관련 조문

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조례안으로 비용 발생 관련 조문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기존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대법원 판결 및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에 따른 폐지조례안으로 조문 상 비용이 수반되는 재정적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함.